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2** | 2025.12.22 (2025.12.15~2025.12.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①초전도체와 K-불업 분야의 ②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③K-디지털헬스케어, ④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아래 ①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②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③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④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인 「**회계기본법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고 용 형 태 별 · 성 별 고 용 현 황 등 을 공 시 하 고 , 고 용 형 태 별 · 성 별 고 용 현 황 에 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정희용의원 등 12인)**」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2.22(월) 10:00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행안위>, <농해수위> 등에서 청원 및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붐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기획재정부) · 8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 9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산업통상부) ·····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1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1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2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 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 14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의원 등 11인) ·····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의원 등 10인) ·····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의원 등 10인) ····· 18
- 회계기본법안(박찬대의의원 등 10인) ····· 1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 19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2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 20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 21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                         | 21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                     | 22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 | 22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  | 23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 | 23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  | 23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 24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 25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          | 25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       | 25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 26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 26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                     | 27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       | 27 |
|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                  | 27 |
|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정희용의원 등 12인) .....             | 28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0인) .....                    | 29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                         | 29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                     | 30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의원 등 16인) .....                      | 30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 31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                | 31 |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
- [에너지·자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 [조세] 「해외 자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관련 국제조세소송 승소 사례
-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 [소비재·유통업]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재활용분담금 강화 등 탈플라스틱 정책 본격 시행 예고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기획재정부 | <p><b>「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불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혁신경제, 1 2 3차 이어 4차 추진계획 발표,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모두 발표</li> <li>-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추진계획을 통해 미래 혁신 가속화</li> <li>- 민·관합동 추진단 중심으로 현장의견 반영...산업 대전환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li> </ul> | 2025-12-16 |
|-------|--------------------------------------------------------------------------------------------------------------------------------------------------------------------------------------------------------------------------------------------------------------------------------------------|------------|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지난 8.22(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음.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힘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힘

\* (1차, 9.10.) 차세대(SiC 등)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 10.20.)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3차, 11.26.)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①초전도체와 K-불업 분야의 ②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③K-디지털헬스케어, ④K-콘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하였음

①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함.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임

※ '26년 예산 주요내용: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원, 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네틱기술개발(93억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핵융합연, 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120억)

②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 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26년 예산 주요내용: 자금지원임상3상 특화펀드(600억원, 신규), K-글로벌백신편드(200억원, 신규), 인력의사과학자도약프로그램(96억원, 신규), 기술개발구조기반AI신약개발(24억원, 신규), 글로벌K-바이오헬스 글로벌진출(245억원)

③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26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

※ '26년 예산 주요내용: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55억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200억원, 신규)

④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활성화를 뒷받침

※ '26년 예산 주요 내용: 자금지원K-콘텐츠펀드출자(4,300억원), 기술개발K-Culture 글로벌스타트업 육성(93억원), 인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장르별 인력양성(325억원, 신규), 해외진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등(79억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

2025-12-1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히트펌프란 주변(공기, 땅, 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음.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임.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이번 방안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아래 ①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②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③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④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함.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함

## ②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 ③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함.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하여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함. 또한, 신축건물 난방을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를 추진

## ④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하여 히트펌프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5-12-16 시행 |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추가하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산업통상부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2026-06-17 시행 예정 |
|-------|-------------------------------|------------------|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5-12-19 시행 |
|----------|------------------------------------|---------------|

배출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인 '비용발생도'를 배출권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집약도'로 대체하고, 배출권의 유상·무상 할당 여부를 '할당대상업체' 외의 단위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탄소집약도'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정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2-16 시행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의 방법에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의 방법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반행위가 그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21 시행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 사항을 정하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2026-12-17 시행 예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문화체육관광부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2025.12.17.<br>~2026.01.27. |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 044-203-2885, 팩스: 044-203-3489)

|       |                            |                             |
|-------|----------------------------|-----------------------------|
| 산업통상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5.12.19.<br>~2026.01.28.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징수 위탁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2, 팩스: 044-203-4762)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5.12.17.<br>~2026.01.26. |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 면제기준을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와 재활용의무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①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함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②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함 (안 제28조의4)
- ③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48조제3항제21호 신설)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tel:044-201-7381) (전화: 044-201-7381, 팩스: 044-201-7394)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5.12.16.  
~2026.01.26.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 주요 내용은

- ①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 (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개정)
- ② 신고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 ③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tel:044-201-3511) (전화: 044-201-3511, 팩스: 044-201-3497)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18.  
~2026.01.27.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중단안전구역과 연결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전화: 044-201-4337, 팩스: 044-201-5634)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회의원 등 13인)

2025-12-09 발의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의4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18 제출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데,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18 제출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물권·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물권·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정무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12-15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2025-12-15 발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규모, 이용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가파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2제1항)

## 정무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6조의5)

## 정무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2025-12-17 발의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 시간에 제출되고 정정·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회계기본법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025-12-18 발의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공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1조제7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12-19 발의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 기획재정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12-18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2025-12-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2025-12-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령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7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3인)

2025-12-17 발의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5인)

2025-12-18 발의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5-12-17 발의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                                 |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5-12-15 발의 |
|---------------------|---------------------------------|---------------|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                                         |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 2025-12-15 발의 |
|---------------------|-----------------------------------------|---------------|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 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                     |                                            |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5-12-18 발의 |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위탁거래, 입찰·제안요청, 투자협약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3 신설 등)

## 보건복지위원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12-18 발의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025-12-15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2025-12-18 발의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92%,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 77개중 70개)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또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및 고용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  
정희용의원 등 12인)

2025-12-18 발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2025-12-15 발의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 국토교통위원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025-12-15 발의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025-12-15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2025-12-15 발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 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5-12-16 발의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2025-12-17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5조제2항)**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본회의 일정

| 구분  | 일시             | 내용      |
|-----|----------------|---------|
| 본회의 | 12/22(월) 10:00 | - 안건 심의 |

#### 2.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행안위    | 청원심사소위   | 12/23(화)<br>10:00 | - 청원 심사                                                             |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소위 | 12/22(월)<br>10:00 | - 법안 심사                                                             |
| 인사청문특위 | 전체회의     | 12/22(월)<br>09:30 |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br>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12/22(월)<br>10:00 |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              | 김승수·민형배<br>의원실   | 의원회관<br>7간담회의실  |
|                 | 12/22(월)<br>10:00 |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 박수영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0간담회의실 |
|                 | 12/22(월)<br>14:00 |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        | 조승환·주철현<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12/23(화)<br>10:00 | WACON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 고동진·안철수<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2소회의실   |
|                 | 12/24(수)<br>10:00 |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장겸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자료집<br>등        | 12/22(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4호(2025-24호) 발간    | 국회도서관            |                 |
|                 | 12/24(수)          | 「Data+」 제24호(2025-24호) 발간       |                  |                 |
|                 | 12/24(수)          | 「금주의 서평」 제2025-50호(통권 제759호) 발간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12/16(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5-25호(통권 제288호) | 국회도서관 |    |
|          | 12/9(화)  | 「금주의 서평」 제2025-49호(통권 제758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12/15(월) | 공정거래    | <a href="#">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a>                                                        |
| 12/16(화) | 에너지·자원  | <a href="#">‘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a>                                                        |
| 12/18(목) | 조세      | <a href="#">「해외 자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관련 국제조세소송 승소 사례</a>                                          |
| 12/19(금) | 소송      | <a href="#">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a> |
| 12/19(금) | 소비재·유통업 | <a href="#">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재활용분담금 강화 등 탈플라스틱 정책 본격 시행 예고</a>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